

EU 8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I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1. EU, 급식아동을 위한 ‘과일, 야채, 우유 배급 계획’ 지속 실행

- 출처: 유럽위원회 (2018.09.03.)

http://europa.eu/rapid/press-release_IP-18-5382_en.htm,

http://europa.eu/rapid/press-release_IP-18-1823_en.htm

- 유럽위원회는 취학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‘과일, 야채, 우유 급식 계획(EU School fruit, vegetables and milk scheme)’의 지속 시행 계획을 발표함
- 학생들의 전반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마련된 해당 계획은 유럽연합 회원국 취학아동에게 ① 과일, 야채 및 우유를 배식하고 ②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 및 식품의 생산과정을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
- 해당 계획은 기존의 ‘채소, 과일급식’과 ‘우유급식’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2017년도 1월부터 실행됨
 -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, 참여국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준행하여야 함
 - ① 신선채소, 과일 및 우유 배급을 우선으로 하며, 회원국은 경우에 따라 가공채소와 과일을 쥬스 및 수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기타 유제품(요구르트, 치즈 등)은 영양학적 필요가 인정될 경우 우유 대신 취급 가능함. 그 외 기타 농식품, 올리브, 올리브 오일, 꿀 등이 취급가능 함
 - ② 식품의 선택은 건강 및 환경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입하여야 하며, 유기농 식품의 구매가 적극 권고됨
 - ③ 해당 계획이 건강한 식문화를 형성을 위해 마련됨에 따라, 급식시 당류의 취급을 제한하며, 특히 설탕, 소금, 불포화 지방산 및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지양함
- 해당 계획은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8개 회원국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,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, 유럽통합농업정책

(Common Agriculture Policy)의 EU School Scheme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

- 보고에 따르면, 2016~2017년도 유럽연합 회원국 내 1억 2천 2백만 아동이 7만 9천 개 학교에서 ‘채소, 과일 급식’에, 1억 8천만 아동이 ‘우유 급식’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남.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유럽연합 내 해당 계획을 통해 총 7만 4천 톤의 채소, 과일이, 28만 5천 톤의 유제품이 소비되었으며, 주 혜택대상은 6~10세 아동 취학아동임
- 2016~2017년도 가장 많이 섭취된 과일은 ① 배, ② 자두, ③ 복숭아, ④ 오렌지, ⑤ 딸기, ⑥바나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야채는 ① 당근, ② 토마토, ③ 오이, ④ 피망 순으로 나타남
 - 우유는 주로 맛이 첨가된 우유 혹은 발효된 요거트가 주로 제공되었으며, 치즈 역시 상당량 배급되었음
 - 관련한 교육 수업은 인근농가의 농민, 학교 정원관리사의 수업, 쿠킹 클래스와 요리강연 혹은 게임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
- 유럽위원회는 해당 계획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2018~2019년도 2.5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며, 이중 1.5유로는 채소, 과일식단에, 1.0억 유로는 우유급식 식단을 위해 지출될 예정임
- 유럽 내 전반적인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식 섭취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, 품질 좋은 식자재를 사용한 식품의 수출이 독려되며,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하는 마케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

2. 노벨푸드 ‘합성 제아잔틴’에 관한 요건변경 승인

-출처: EUR-Lex(2018.08.13.)

<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PDF/?uri=CELEX:32018R1132&qid=1536580958160&from=EN>

- 유럽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노벨푸드 ‘합성 제아잔틴(synthetic zeaxanthin)’의 명칭과 라벨링의 요건변경 요청을 승인함
 - 해당 변경요청은 유럽연합 규정 (EU) 2015/2283에 의해 승인되고, 이에 따라, 실행규정 (EU) 2017/2470의 부속서 내용이 개정됨
- 규정 (EU) 2015/2283 제 12조항에 따르면, 위원회는 유럽 시장에서 유통되는 노벨식품의 리스트 변경의 초안 작성이 가능함
- 천연 ‘제아잔틴(Zeaxanthin)’은 평소 식생활에서 섭취 가능한 영양

성분으로 과일과 녹황 잎채소 및 계란 노른자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, 최근에는 유럽의회와 위원회로부터 건강보조식품으로 정의되어 (관련규정 2002/46/EC) 시중에 판매되고 있음

- 유럽위원회는 유럽위원회 결정 2013/46/EU와 (EC) No 258/97에 따라 건강보충제에 함유된 합성 제아잔틴을 노벨푸드 성분으로 지정하고 일일 섭취량이 2mg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음. 합성 제아잔틴에 대한 정의, 명칭 및 라벨링에 관한 설명은 유럽연합의 실행결정 2013/49/EU에 의해 정의 되고 있음
- 한편, 합성 제아잔틴의 명칭과 라벨링에 관한 변경요청을 제안한 신청자는 ‘합성(SYNTHETIC)’이라는 어감에서 비롯한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, 명칭 변경을 신청함
- 현재 유럽연합에서 지정·관리되는 ‘노벨푸드 리스트’에는 다수의 ‘합성식품’이 존재하며, 이러한 식품은 통상 유사성분의 ‘천연식품’이 존재하며, 두 식품 모두 식품 보조제에 사용되고 있음.
- 한편, 해당 합성식품은 변경승인에 따라 더 이상 합성식품으로 정의 되지도, 라벨링에도 합성식품으로 표기되지도 않음
 - 변경 후 제아잔틴의 취급법은 기존 해당식품의 실행결정 2013/49/EU에 따라 지속하여 정의 될 예정이며, 사용과 섭취량 제한 량에는 변화가 없음. 이에 따라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험도 초래하지 않음
- 새로운 명칭과 라벨링에 관한 적용은 유럽회원국 전체 적용가능하며, 2018년 8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함
 - 이미 ‘합성 제아잔틴’ 이라고 표기되어 판매되는 식품은 2019년 9월 3일까지 유통 가능함
- 이에 따라, 천연 제아잔틴 혹은 합성 제아잔틴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하는 수출업체의 주의가 촉구됨

※ 관련 규정 (EU) 2017/2470) 부속서 (제아잔틴의 변경에 따른 제아잔틴)의 표 1 변경

규정 (EU) 2017/2470) 부속서 표 1 변경			
허가된 노벨푸드	취급 가능한 노벨푸드 조건		라벨링관련 요구사항
제아잔틴	특별 식품 카테고리	최대용량	‘제아잔틴’을 함유하는 노벨식품의 라벨링에 적용
	2002/46/EC 에 규정된 식품보충제	2 mg/일	